

의안번호	2218787
의 퇴 인	전종덕 의원
회 답 일	2026.7. 3.
추계번호	26C249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제7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장기요양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임금 수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금 보전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시행하는 등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장기요양요원 임금은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총화계통추출된 인원을 대상으로 직종급여별 월평균 값([참고자료] 장기요양요원 종사자 수임금 현황)이 조사되므로, 개인 수준의 직위 및 호봉에 따라 현재 임금과 가이드라인의 권고기준의 차액을 바탕으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사회비용추계과	이소임	이제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소임	02-6788-4742	soimlee@assembly.go.kr

[참고자료]

□ 장기요양요원 종사자 수 현황

[참고표 1] 직종별·급여별 장기요양요원 종사자 수 현황: 2026년 4월

(단위: 명)

구분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시설	11,065	2,452	11,448	2,074	1,134	108,361
재가	35,073	3,580	6,742	477	197	574,380
계	46,138	6,032	18,190	2,551	1,331	682,741

주: 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으로부터 연계된 인력신고 등록기준 자료로, 직종별·급여별 중복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장기요양요원 임금 현황

-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 (조사기간) 2022년 4월~6월
 - 평균시급은 월평균 임금을 월평균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산출(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참고표 2] 직종별 장기요양요원 임금 현황

직종	표본(명)	월평균 근무시간	월평균 임금(만원)	평균 시급(원)
요양보호사	3,826	98.8	117.0 ^주	11,842
사회복지사	289	167.4	213.3	12,742
간호(조무)사	162	158.1	199.0	12,587
물리(작업)치료사	26	160.4	218.8	13,591

주: 요양보호사의 경우 방문요양·방문간호의 경우 월평균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해석 시 유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표 3] 급여별 장기요양요원 임금 현황

급여	표본(명)	월평균 근무시간	월평균 임금(만원)	평균 시급(원)
재가복지시설(방문요양)	2,886	80.6	96.2	11,935
재가복지시설(방문목욕)	148	76.5	102.0	13,333
재가복지시설(방문간호)	12	79.1	155.9	19,709
재가복지시설(주야간보호)	325	166.5	185.1	11,11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3	178.0	196.4	11,033
노인요양시설	856	167.9	203.4	12,1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